

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 등이 추진 중인 「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제1항 및 「광명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7일

광명시의회 의장

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광명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인근 시·군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,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4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나.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3조)
- 나.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연령별 배정기준(안 제17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6년 10월 24일(월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·팩스

○ 보내는 곳 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(우 14234)

○ 전화번호 : 02)2680-2524, 팩스번호 : 02)2680-2637

○ 전자우편 : hcnr2004@korea.kr

다. 기재내용 : 성명(단체명)·주소·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광명시의회사무국(의사팀)

마. 문의전화 : 02)2680-2524

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25인”을 “25명”으로 하며, “5인”을 “5명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1. 30대 미만 5명 이내
- 2. 30대 이상 ~ 40대 미만 5명 이내
- 3. 40대 이상 ~ 50대 미만 5명 이내
- 4. 50대 이상 5명 이내
- 5. 기 타 5명 이내

제1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2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발 의	나상성 의원 대표발의 (외 4명)
검토 및 소관	평생학습원
입 안	나상성 의원 (02-2680-2509)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.	제17조(구성 등) ① ----- ---1명-----25명----- 5명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1. 30대 미만 5명 이내 2. 30대 이상 ~ 40대 미만 5명 이내 3. 40대 이상 ~ 50대 미만 5명 이내 4. 50대 이상 5명 이내 5. 기 타 5명 이내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
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,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⑧ ----- ----- ----- -----
⑧ 위원장은 사임·해촉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 할 수 없으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.	⑨ ----- ----- ----- -----
⑨ 재위촉·공개모집·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.	⑩ ----- ----- ----- -----
⑩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지표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⑪ ----- ----- ----- -----
⑪ 위원들의 역할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	⑫ ----- ----- ----- -----
제19조(간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19조(간사) ① ----- ---1명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실비보상등) ①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u>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	제23조(실비보상등) ① ----- -----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3조)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광명시 18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년 도 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합 계
회의참석 수당	108,720	108,240	188,640	188,640	188,640	782,880

3. 작성자

평생학습원장 김 미 란

참고자료

□ 타 시·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현황

시·군명	회의참석 수당	비고
안양시	3만원	
평택시	2만원	
부천시	3만원	
시흥시	7만원	
군포시	4만원	
김포시	2만원	관련 규칙을 개정 중 (5만원으로 인상 예정)
의정부시	2만원	
안산시	7만원	
화성시	3만원	
남양주시	7만원	